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06

대 전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127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군수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[redacted] 담당변호사 [redacted]
제 1 심 판 결	[redacted]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8구합1482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4. 16.
판 결 선 고	2020. 5. 14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2. 11. 12. 원고에게 한 B 화물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06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그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

○ 제2쪽 제4~5행의 "법인이다"를 "법인으로, 2010. 3. 26.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"로 고쳐 쓴다.

○ 제2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 다. 피고는 2013. 1. 14.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. 10. 15.까지 약 15회에 걸쳐 원고에게 우편으로 위 취득세의 납부독촉고지서를 보냈다. 』

○ 제2쪽 제9행의 [인정근거]에 "갑 제3호증의 1, 2, 3, 을 제2,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"를 추가한다.

○ 제3쪽 제1행의 "원고는" 뒤에 "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늦어도 2013년 초경에는 알았음에도(원고 대표이사도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였다) 그로부터 90일 이내 또는"을 추가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06

을 같이하여 정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